

審 查 報 告 書

1995. 2. 21.

내 무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년 2월 7일 속초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6회 속초시의회(임시회) 제1차 내무위원회
('95. 2. 21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동운)

가. 제안이유

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·운용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속초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규정 (안 제2조)
- 속초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3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속초시의 본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므로써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였고,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 남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부여하였다고 사료되며
-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(답변자 : 총무과장 김동운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총정원을 조례로 규정 운영할 경우 부서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는 바,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?	○ 내부부에서 시·군 통제기능 역할로 기능직 1명이라도 증원할 시는 내부부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되며, 문제가 대두되면은 도지사, 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시로 고쳐야 할 것임.
○ 과 증설, 축소 등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단서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?	○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삽입은 안됨.
○ 동사무소에 여직원 비율이 많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란 동업무 보강을 위해서 근무지를 본청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?	○ 6월달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기능직 보강이 사실상 필요하므로 동별로 균형 을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이며, 본청으로 는 사실상 애로가 있으므로 양해 바람.

5. 討論要旨 : 없 음

6. 修正案 要旨 : 없 음

7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첨 부 :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부. 끝.

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의안

번호

제출년월일 : 1995. 2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·운용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속초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.

나. 속초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.

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속초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본 청 : 336 명
2. 직속기관 : 32 명
3. 사 업 소 : 67 명
5. 등 : 148 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속초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속초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